#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지침

제 정 2022.02.15 개 정 2022.12.09

[플랜트기술부 042-600-8364]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사(公社)의 사업장(대외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하다.
- ② 이 지침은 공사(公社)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공사(公社)의 안전보건활동에 관련된 개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22.12.09>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중대재해" 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4. "사업주"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5. "근로자대표" 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다.
-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11. "건설공사"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4. "사업장" 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대외사업 현장을 말한다.
-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대외사업 현장은 단위 사업수행 책임자를 말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총괄 지휘·관리한다.
- 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17. "안전경영위원회"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18. "안전근로협의체" 란 공사(公社)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공사 및 협력업체의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 19.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 20. "위험성평가" 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에 따라 해당 위험요소에 대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21. "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건설, 정비·보수, 시운전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작업사항에 대한 정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일반작업허가, 위험작업허가 등이 있다.

- 22.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 23. "아차사고"란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설비의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 24. "위험작업"이란 산업재해를 일으키기 쉬운 특히 위험한 작업을 말하며, 근로자의 생명, 신체, 정신 등에 위해(危害)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하는 작업을 말한다.
- 25. "작업중지권"이란 공사(公社) 사업장 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협력업체 포함)가 산업재해가 발생함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6.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2.12.09>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②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렁「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준수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해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② 모든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규와 회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자기 스스로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③ 제1항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급인(관계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근로자에 있어서도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수급인과 현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09>
- 제5조 (협조의 요청 등) ① 본사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수행부서장, 현장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09>
- ② 제1항에 있어서 사업수행부서장, 현장대리인, 기타 관계인은 본사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제6조 (보고, 출석의 의무) 모든 근로자(감사는 제외한다)는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별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제7조 (안전보건경영방침) ① 공사(公社)의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공사(公社)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사(公社)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수정한다.
- 제8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지침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 (재해예방 의무) 이 지침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나. 공사(公社)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중진
-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 마. 지속적으로 공사(公社)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 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

#### 2. 부서장

- 가. 경영, 정비, 영업, 대외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 나. 경영, 정비, 영업, 대외사업 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 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이행 의무를 관리·감독한다.
- 3. 안전보건 주관부서(장)
- 가.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작업책임자 등에 대해 지도·조언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활동 지원자 역할 수행
- 4. 근로자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나. 공사(公社)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 제10조 (악정보건관리지침 작성 변경) ① 악정보건관리지침 작성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② 이 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 관리지침에 반영한다.
- ③ 이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이 지침 제23조에 따라 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지침이 작성·변경된 경우에는 공사(公社)의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위 항을 제외한 안전보건관리지침 작성·변경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사규관리규정"을 따른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11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이행) ①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공사 (公社)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연간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전 사업장에 공유하고, 사업수행 부서에서는 부서 실정에 적한한 계획을 수립·시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 2.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5.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④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⑤ 공사(公社) 전 임·직원은 수립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적극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정부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 (안정보건조직) ①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다.
- ② 안전보건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텝조직으로 안전부서를 둘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부서의 소속으로 하며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는 관련법에 의해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③ 공사(公社)는 제1항과 제2항의 조직·직책에 이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렁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아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지침 제15조에서 정한 아전관리자와 제16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를 지휘 · 감독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한다.
- 제14조 (관리감독자) 경영, 정비, 영업, 대외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파트장, 차장 등) 및 대외사업 감독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삭제 2022.12.09>
- 3.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6.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8. 해당 작업의 안전수칙 및 지침의 준수 지도
- 9. 해당 작업장 안전표지 부착, 안전수칙 게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10. 해당 작업장 화기담당자 지정, 소화기 및 피난통로 확보
- 11.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신규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실시
- 12.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15조 (안전관리자) ① 이 지침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근로자 등에게 지도·조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8.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공사(公社)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아저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지침 제16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와 협력한다.
- ⑤ 공사(公社)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 ⑥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公社)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 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다.
- 제15조의2 (명예안전감독관) ①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직 및 근로자 대표가 안전관련 지식·경험·노하우 등을 지도·조언한다.
- ② 명예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위험작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지도
- 2. 근로자와의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 청취 후 관련부서에 의견
- 3. 작업장 및 설비·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확인 및 개선의견 제시
- 4. 사고·재해위험 발견 시 작업증지 및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요청
- ③ 명예안전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추천하는 근로자(전문직), 노동조합 중에서 명예안전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함 수 있다.
- ④ 명예안전감독관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제2항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며, 그 활동실적에 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⑤ 명예안전감독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년도 수립한 '명예안전감독관 운영계획'을 따른다.
- 제16조 (보건관리자) ① 이 지침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 근로자 등에게 지도·조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산업보건의(「의료법」에 따른 의사로 한정한다)의 직무
- 가.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나,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다.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
-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 ·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9.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1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
-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공사(公社)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 때에는 이 지침 제15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와 협력한다.
- ⑤ 공사(公社)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 자격)에 따른다.
- ⑥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제17조 (안전·보건관리의 전담)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직무수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② 안전보건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인력은 안전보건분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12.09>
- 제18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 (작업책임자)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책임자로 지정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한다.
-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3. 중량물의 취급작업
- 4.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 5.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6.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 7.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8. 발주처에서 작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 9.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 제20조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사(公社)의 안전관리 관련 계획 심의,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 등 안전관리 필요사항을 논의할 목적으로 공사(公社) 임·직원, 근로자 대표 및 사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다.
- ② 안전경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당연직 위원 : 공사(公社) 임·직원 6명(임원 및 부서장 5명)
- ·임원 : 정비사업본부장
- · 부서장 : 안전품질처장, 생산기술처장, 플랜트사업처장, 전략기획처장, 인사노무처장
- 2.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2명
- 3. 전문가 위원 : 대학교수, 재난 및 안전관련 전문가 등 사외전문가
- ③ '안전경영위원회'의 직무, 심의·의결사항,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관련 위원회 운영 지침서(RM-I-1010)"를 따른다.
- 제2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 ②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근로자 대표
-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사업의 대표자(대외사업 수행 책임자)
- 2 안정관리자 1명
- 3. 보건관리자 1명
- 4.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각 위원은 회의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장 중 도급을 주어 운영되는 사업장은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 관련위원회 운영 지침서(RM-I-1010)"를 따른다.
- **제22조 (위원회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지침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4조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의 합의에 따라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 1. 사내 인트라넷
- 2. 사업장 게시판 게시
-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공사(公社)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12.09>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착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2.09>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제2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사(公社)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09>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25조의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27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강사 등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② 사업장은 수립된 연간교육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수요에 맞는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③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시 화재·가스·전기·교통분야 등을 포함함 수 있다.
- ④ 안전보건교육은 공사(公社)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 가. 정기안전보건교육
- 나. 채용 시의 안전보건교육
-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안전보건교육
-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 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
- 바. 기타 안전보건의식 향상교육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 가. 신규교육
- 나. 보수교육
-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의견수렴 등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⑥ 교육대상과 교육시기, 교육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며,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이 지침 제35조에서 정한 자를 강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안전보건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침서 (RM-I-0804)"를 따른다.
- 제28조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공사(公社)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함.
- 2.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대상 교육 내용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제1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내용
-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수 있다)
- 자.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차.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및 제27조 (안정보건교육의 면제)를 따를 수 있다
- 제29조 (신규채용 시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7.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8.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10.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및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를 따를 수 있다.

- 제29조의2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을 경우 특수형태 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시 1시간 이상)
- 2.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6.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9.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10.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11.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1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13.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14 보호구 착용에 관하 사항
-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은 이 지침 제31조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따른다.
- 제30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이 지침 제29조 제2항과 같다.
- 제31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2.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및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를 따름 수 있다.

- (5)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지침 제29조 및 제30조의 지침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32조 (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발생시 1회) 교육한다. <개정 2022.12.09.>
  -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 제33조 (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위탁 운영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 3. 보건관리자(위탁 운영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 4. 안정보건관리담당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기	
ऋच सा. ८	신규교육	보수교육	<u> </u>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신규 : 선임 후 3개월 이내	
2.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수 :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6시간 이상 (양성교육)	8시간 이상	양성: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 보수: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 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제34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공사(公社)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

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2.2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대상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제35조 (안전보건교육강사)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관리감독자
-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 산업보건의
-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워 과정을 이수한 자
- 8.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및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공사(公社)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 (1)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 소방공무워 또는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 (4)「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 (5) 공인노무사, 변호사
  - (6)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7)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② 안전보건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한다.

- **제36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교육 지원)** ① 도급사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장소, 교육자료 등을 지원함 수 있다.
- ② 발주부서 공사감독자는 도급사업으로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 지침 제29조(신규채용시 교육), 제29조의 2(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에 따라 교육하여야 한다.
- 제37조 (기록·보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일지(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확인서(수료증 등) 등을 받아 보존한다.
- 1. 교육일시 및 장소
- 2. 교육강사
- 3. 교육과정 및 내용
-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8조 (안전점검체계) ① 공사(公社)는 안전경영 및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외사업 현장의 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본 사	현 장
에너지사업본부장: 1회 이상/분기 사업수행부서장: 1회 이상/월 사업수행부서 부장: 1회 이상/분기 사업수행부서 안전담당자: 1회 이상/분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회 이상/분기 안전관리자 : 수시 관리감독자 : 위험 및 주요 작업 시

- ② 해빙기, 혹서기 등 취약시기 및 안전경영시스템 변경, 사고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 (안전점검일지 등) 관리감독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 유지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 1. 안전점검일지
- 2. 안전교육일지
- 3. 월간 안전점검현황
- 4. 각종 사고보고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 제40조 (설계도서 등의 보관) 관리감독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종합보고서 등
- 2. 시공관련도서 :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공사일지, 사고관련 기록 등
-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 제41조 (TBM 및 안전작업 시행) ① 관리감독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TBM을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TBM 시에는 작업장소 및 작업에 영향을 주는 주변을 확인하고 일반 또는 위험작업 허가서상의 작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당해 작업과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와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변경사항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TBM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공사작업 전 안전회의 지침서(RM-I-1003)"에 따른다.
- **제42조 (안전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관리감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작업장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수칙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 **제43조 (전기설비 안전)** ①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조치 한다.
-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덮어 감쌀 것
-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접지를 하며, 관리감독자는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점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하거나 재설치 한다.
-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 다. 고압(1.5kV 초과 7k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1kV 초과 7kV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츳전 금속체
  -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 나,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 다. 고정형 ·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 기구
  -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비접지형 콘센트
  - 마 휴대형 손전듯
-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이 경우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며, 관리감독자는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다.
-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 기구
-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kV 이하 직류전압이나 1kV 이하의 교류저안을 말하다)용 저기기계·기구
-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 ④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며, 관리감독자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한다.
- ⑤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함 것
-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 ⑥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⑦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함 것
-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 할 수 없도록 할 것
-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 ⑧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 제44조 (추락 방지) ①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는 안전모, 안전대(또는 안전벨트)를 지급·착용하여야 한다.
- ③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건축물·교량·비계 등의 조립·해체·변경작업에 의한 추락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 방법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 ⑥ 비계 설치·해체·변경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가 지휘, 안전대 착용,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다.
- 제45조 (낙하, 비래 방지) 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 설정, 감시인 배치, 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낙하물 방지망 및 방호선반 설치 시 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6조 (가설통로 설치)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나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통로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함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을 하여야 한다.
- ③ 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⑤ 경사는 30도 이하로 설치하고(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⑥ 통로는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발판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 비계과이프와 발판간의 이격 거리는 10센티미터 이하, 고정철저, 못ㆍ철선ㆍ자재에 걸리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47조 (콘크리트 타설 안전) ① 작업 시작 전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②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하여야 한다.
- ⑤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를 준수하고 일정구간 집중 타설로 인한 편심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 하여야 한다.
- 제48조 (굴착공사 안전) ①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의 손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 및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②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굴착작업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 및 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굴착작업 근로자에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제49조 (흙막이공사 안전) ①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하여야 한다.
- ②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 · 부식 ·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4. 침하의 정도
- ⑤ 조립·해체·고정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지휘하에 작업, 설치시기 지연 및 과굴착 금지, HBP(Heaving/Boiling/Piping)를 방지하여야 한다.
- **제50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건설기계 등)** 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작업지휘자(유도자), 신호방법 및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또는 화물에 접촉위험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및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⑤ 전조등 및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운전자는 안전모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51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5.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제52조 (비계구조물 안전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비계구조물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에 대해 적적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해체하여야 한다.
- ③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가급적 시스템비계를 적용하도록 한다.
- 제5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설비,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고자 함 경우 유해·위험 방지 사항

- 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②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고자 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심사 대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09>
- 제5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12.09>
- ② 사업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12.09>
- ③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 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제5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2.12.09>
- ② 사업장은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12.09>
- 제56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조치·보호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 제57조 (안전검사) ① 공사(公社)의 소유물 중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이하"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④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⑥ 고압가스의 사용 및 고압가스의 용기등의 검사 등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따른다.
- ⑦ 특정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하는 등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의 기준을 따른다.
- 8) 승강기를 설치·운영하는 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따른다.

- ③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소방안전관련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약칭:소방시설법)」의 기준을 따른다.
- 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의 기준을 따른다.
- ① 수소생산 및 공급 등 수소사업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수소법)」의 기준을 따른다.
- 제58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한다.
-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한다.
-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2.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3.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④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 ⑤ 작업별 표준작업안전수칙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EHSQ수칙 관리 지침서(RM-I-1006)"를 따른다.
- 제5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작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물질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 등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고 사용한다.
- ④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사용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보관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물질 보관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 ⑤ 해당 근로자는 공사(公社)에서 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한다.
- 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을 따른다.
- ②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危害)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 **제60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1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① 근로자(협력업체 포함)는 산업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② 공사(公社)는 산업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이상기후 발생시 현장 근로자는 잦은 휴식 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작업하거나, 필요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 용품을 지급하거나, 실외 작업의 경우에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여 작업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 주관부서 및 관리감독자 등은 현장 작업(차량운전 포함)에 투입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중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로 확인될 경우 작업중지 또는 투입을 금지한다.

구분		주의보	경보	
1. 폭염		°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기온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한과		<ul> <li>기운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 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가 10℃이 상 15℃ 미만이고, 얼마간의 냉해가 예 상 될 때</li> </ul>	*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그날의 최저 기온과 이튿날의 최저 기온의 차가 15°C 이상이고, 상당한 냉해가 예상 될 때	
3. 미세먼지 ·	미세먼지 (PM <sub>10</sub> )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 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 <sub>10</sub> 시간평균농도가 150,m/m'이상 2시간 지속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 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 <sub>10</sub> 시간평균농도가 300,µm/m'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 (PM <sub>2.5</sub> )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 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₂.5 시간평균농도가 90/m/m'이상 2시간 지속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 동측정소에서 측정된 PM₂.5 시간평균농도가 180,μm/m'이상 2시간 지속	

- ※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시 대응요령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준용한다.
- 제62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한 시설·장비, 기계기구 및 장소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한다.
- ②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정보건표지를 부착한다.
- 제63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 점검 및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공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며, 점검할 내용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 8. 안전보건관계지침 · 기준 · 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과 근로자가 작업전 안전조치(개인보호구 착용 등)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⑤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 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갖구하여 시정조치한 후 안정보건 담당부서로 통보한다.
- ⑥ 현장 안전보건 점검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64조 (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기작업, 밀폐공간내 작업, 고소작업 등의 각종 위험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위험작업허가(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일반작업허가(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③ 작업허가 발급 등이 발주고객의 작업허가제도를 따라야 할 경우 발주고객의 안전보건관련 규정 및 절차·기준을 따른다.
- ④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위험작업 시 직접적인 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 1. 가연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 가스절단 등의 화기작업
- 2. 제한공간 실내에서의 가스 방출작업
- 3. 지상에서 5미터 이상 고소작업, 단 작업발판 등이 설치된 곳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 4 탱크 또는 용기류 지하 매혹 배관내부 등 화기시설이 부족하 장소의 밀폐공가 작업
- 5.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곳에서 수평거리 2미터 미만에서의 굴착작업, 암석 굴착작업
- 6. 폭발성, 독성물질, 부식성 물질 등의 화학물질 취급작업
- 7. 수배전반 작업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8. 거푸집(동바리 포함) 및 비계해체작업[슬래브(동바리 포함) 거푸집만 해당]
- 9. 흙막이 가시설의 보강. 설치 및 해체작업(단. 조립식 간이 흙막이 제외)
- 10. 기타 관리감독자 등 안전관계자가 위험작업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업
- ⑤ 휴일 작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부득이한 휴일작업, 발주고객 등이 긴급으로 요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을 시했함 수 있다.
- ⑥ 공사(公社)에서 발행하는 작업허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작업허가 운영지침서(RM-I-1011)"를 따른다.
- 제65조 (안정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한다.
- ② 공사(公社)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 ③ 공사(公社)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따른 안전진단을 명령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제66조 (교통재해 예방) ① 사업장 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 ② 사업장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운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③ 근로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등에 따른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한다.
- ④ 사업장 내·외부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등은 응급조치 후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사고관리 지침서(MI-I-1701)" 계통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보험사, 119 구조대 등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절차·지침을 따른다.
- 제67조 (비상조치계획) ① 공사(公社)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사업장별로 작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 2.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3.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대피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재난안전법)」 및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 ⑤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신설 2022.12.09>
-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제68조 (피난 및 대응훈련) 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한 피난 및 대응 훈련을 실시 (발주고객 등과 합동으로 실시 가능)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한다.
- ② 피난 및 대응훈련 계획 수립시 시나리오는 별도로 작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9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발주고객,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70조 (아차사고·잠재위험요인 개선사례 등록·공유) ① 근로자는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요인이 발견 시 개선조치를 시행하며, 관련 시스템에 등록·공유한다.
- ②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아차사고 사례 및 잠재위험요인 개선사례가 관련 시스템에 등록·공유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③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 개선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며, 우수사례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홍보한다.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제71조 (작업환경측정)**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 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함 것
-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하도급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한다.
- 1. 사내 인트라넷
- 2. 사무실 게시판
-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④ 공사(公社)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 ⑤ 공사(公社)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⑥ 공사(公社)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② 공사(公社)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한다.
- 제72조 (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12.09>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제73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사(公社)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건강진단
- 2. 특수건강진단
- 3. 배치전 건강진단
- 4. 수시건강진단
- 5. 임시건강진단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한다.
- ④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작업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지침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2.「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5. 「선위법」에 따른 건강진단
- 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⑤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공사(公社)가 부담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⑥ 공사(公社)는 건강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한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공사(公社)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 ⑧ 제7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⑨ 공사(公社)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 1. 건강진단기관
- 2. 산업보건의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 ① 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한다. 다만,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한다.
- ① 공사(公社)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4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물질 취급 담당자를 지정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 등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해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④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 ⑤ 해당 근로자는 공사(公社)에서 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한다.
- ⑥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유해위험물질 관리 지침서 (PM-I-1204)"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75조 (개인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또는 그 이상으로 비치하고, 지급·착용하도록 한다.
- 1. 추락의 위험 또는 물체의 낙하, 비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모
- 2. 유해광선, 물체가 눈, 안면 등으로 비산될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보안면
- 3.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귀마개, 귀덮개
- 4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학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정대 안정복록
- 5.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안전장갑 등
-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활선용) 보호구
- 7. 가스, 유증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독마스크
- 8. 미스트,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황사,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 방진마스크, 미세먼지마스크
- 9. 밀폐공가 등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송기식 마스크, 공기호흡기
- 10. 영하 18도 이하의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핫팩, 발열조끼 등 11. 영상 33도 이상의 옥외장소에서 하는 작업 :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
-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사(公社)에서 제공반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한다.
- ④ 관리감독자는 이 지침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청결을 유지해야하는 안전화, 안전모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관리감독자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하며, 개인보호구 지급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안전장구 및 구급용구 관리 지침서 (PM-I-1602)"를 따른다.

- ⑥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제76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 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의 직접 업무(작업)하는 자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7조 (근로시간 연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작업과 휴식의 적정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한다.
- 1. 다량의 고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3.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 4.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5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6.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 7.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8.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특정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제78조 (질병자 등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하한다.
- ② 근로자는 감염병 의심 진단 시(확진시 포함) 지체 없이 공사(公社)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출근 및 근로를 중단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④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공사(公社)에서 운영하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7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를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유해성·위험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조치요령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 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규제 현황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 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을 기록한 대체자료
- ③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 활용할 수 있다.
- ④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한다.
- ⑤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공받는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 1. 제품명
-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 물리적 위험성
-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제80조 (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각독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근로자는 공사(公社)가 시행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또는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건강상태 확인 및 적절한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③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복귀 시 근로자와 혐의하여 작업을 저확하도록 하다.
- ④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제81조 (근로자 건강유지 및 중진) ①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 운전 [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다
- 1.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2.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
-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워의 지원에 노력
-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
-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 제82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며,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 3.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 ③ 공사(公社)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공사(公社)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 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며,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의 경우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식수를 제공한다.
- ⑤ 공사(公社)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물질(황사, 미세먼지 포함)의 노출기준 초과시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유해성 및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한다.

###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제83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 주관부서에 연락한다.
-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지침 제60조에 의하여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이 지침 제60조에 의하여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⑤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의 세부 운영기준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사고관리 지침서 (MI-I-1701)"를 따른다.
-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83조의2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공사(公社)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공사(公社)가 주관하거나 공사(公社)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햇사나 햇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라, 휴게시간 중 공사(公社)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워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3 출퇴근 재해
- 가. 공사(公社)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공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③ 출퇴근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84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사업수행부서 안전담당자의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상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사업수행부서 안전담당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 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 ④ 사업수행부서 안전담당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⑤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 제85조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사업수행부서 안전담당자는 재해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재해분석 결과는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통보하거나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제7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 제8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이 지침 제89조(도급사업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작업의 중지
-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혐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5.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제87조 (도급사업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운영) ① 공사(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에 있어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② 도급사업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사규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2.12.09>
- 제88조 (도급의 숙인) ① 공사(公社)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도급금지의 예외적 승인작업(「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2항) 및 유해·위험한 물질(황산 등)의 취급작업 등 승인대상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은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③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제89조 (도급사업 책임범위) ① 도급인의 사업장(이하 "공사(公社) 사업장"라 한다) 내 모든 장소 및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14개), 안전·보건조치(7개) 장소로 한한다.
- 1.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가. 토사·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나. 기계 ·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다.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마.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바.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사.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아,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자.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 해체 ·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카,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파. 전기 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하.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2.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가.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1).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2).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3).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 · 용단작업
- (4).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 나,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다.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 라.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 마.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 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 사.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제90조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우리 공사(公社) 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우영한다.<개정 2022.12.09>
-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현장소장, 현장 대리인 등)를 참여시켜 수립할 수 있다.
- 제91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公社)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公社)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 2. 작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가. 작업장 순회점검 :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
  - (1). 작업 중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 준수 여부 및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 (나). 작업 전 TBM 실시 여부 및 해당 작업의 위험성 근로자 공유 여부 (작업 전 안전회의록 확인)
  - (다). 작업 중 현장점검 시에는 일반 또는 위험작업허가서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그 결과는 작업구역 내 안전보건관련 게시판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
  - 나. 합동안전보건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 (1). 점검반 구성원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자료, 교육장소 협조 또는 지원
-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 작업환경측정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 운영 사항 및 대피방법, 훈련 등의 통보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7. 다음 각 목의 위생시설의 설치 등의 협조 또는 지원
  - 가. 휴게시설
  - 나. 세면 또는 목욕시설
  - 다. 탈의시설
  - 라. 수면시설
- 8.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9. 제8호에 따른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함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 지침 제86조 제2항의 직무 및 제91조 제2항의 안전보건활동을 도급사업 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여 도급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단,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 ④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사(公社)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⑤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9>
  -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3. 건설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관계수급인 제92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우리 공사(公社)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도금작업
  - 나,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우리 공사(公社)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가.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제93조 (도급공사 안정보건 혐의체) ① 공사(公社)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주(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로 구성하다.

- ② 도급공사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공사(公社) 또는 하도급업체가 요청합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합 수 있다.
- ③ 도급인인 공사(公社)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 ④ 협의체 회의 결과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 ⑤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 4. 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 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 6. 하도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 7.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 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10.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11. 그 밖의 하도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94조 (노사협의체 구성 등) ① 총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혐의체(이하 "노사혐의체")를 구성·우영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대표
- 2.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대외사업 수행 책임자)
- 2. 안전관리자 1명
- 3. 보건관리자 1명
-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④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⑤ 노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 관련위원회 운영 지침서 (RM-I-1010)"를 따른다.
- 제95조 (공사실행계획서 작성) ① 사업수행부서는 수주계약이 체결된 후 유해·위험요소를 반영한 공사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수행부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유해 · 위험요소 사전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6조 (EHSQ 관리계획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EHSQ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EHSQ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EHSQ 관리계획서에 공사실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EHSO 관리계획서에 대해 최종 승인·관리한다.
- ④ EHSQ 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EHSQ 관리계획서 작성 절차서(PM-P-1101)"에 따른다.
- 제97조 (협력업체 EHSQ 관리계획서) ① 작업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협력업체 EHSQ 관리계획서를 착공전에 협력업체 작업책임자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수행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협력업체 EHSQ 관리계획서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타 요구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 ③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협력업체 EHSQ 관리계획서를 검토 후 미비사항이 없을 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업체 EHSQ 관리계획서 검토 보고서를 활용하여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중요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 또한 같다.
- ④ 안전보건 담당부서장은 협력업체 EHSQ 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사항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 제8장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제98조 (건설공사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공사(公社)가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를 발주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정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공사(公社)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함 것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99조 (안전보건조정자) ① 공사(公社)가 2개 이상의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를 발주할 경우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업무, 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제57조(안전 보건조정자의 업무)를 따른다.

- 제100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사(公社)가 건설공사의 발주 또는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으로 수행할 경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사(公社)는 건설공사의 발주 또는 도급인으로 수행할 경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1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공사(公社)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②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102조 (설계변경의 요청) ① 공사(公社)가 건설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사(公社)는 건설공사발주자로 수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침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침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103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공사(公社)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4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公社)의 건설공자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 제9장 위험성평가

- 제105조 (위험성평가 시행)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평가절차 등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위험성평가 절차서[MR-P-0203]"에 따른다.
- 제105조의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공사(公社)가 도급하는 경우에는 공사(公社)의 사업장과 발주사업의 현장에 대해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관련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공사(公社)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 제106조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수강하게 하거나 공사(公社)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107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공정 또는 작업내용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개선·조치되지 않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이 지침 제89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 제108조 (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저에 평가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제109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공사(公社)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 정보
  -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3 위험성 결정의 내용
  -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한다.
- ③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위험성평가 절차서(MR-P-0203)"를 따른다.

#### 제10장 보 칙

- **제110조 (안전문화운동)** ① 공사(公社)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다 같이 참여하며,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은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 ② 사업장 안전문화운동은 각 사업장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문화운동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사(公社) ISO 표준문서 "사업장 안전문화운동 지침서(RM-I-1004)"를 따른다.
- ③ 무재해 달성 일수나 달성시간을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출입구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게시한다.
- 제111조 (안전보건제안제도) ①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다.

- ③ 제안,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112조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운영 등) ① 공사(公社)의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 (협력업체 포함)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상태, 기타위험'등을 발견 시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를 통하여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을 할 수 있다.
- ② 신고(제안)자는 '안전신고' 전용 이메일(내·외부 동일) 또는 전용 유선전화, 스마트 어플을 통해 '위험상태, 기타위험' 등을 신고(제안)할 수 있다.
- ③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규정 "근로자 안전신고 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113조 (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에 대하여 공사(公社)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2. 안전문화운동 목표를 달성한 부서 및 개인
-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 4. '안전신고'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자
-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사(公社)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14조 (장계)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장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련 법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 2. 고의로 공사(公社)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 3.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
- 4. 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 5. 교통사고 유발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
- 6. 고의로 공사(公社) 이미지를 훼손한 자
-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 제115조 (문서보존연한) ① 공사(公社)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 1. 산업재해 발생 기록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 보존)
- 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 ② 일반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16조 (주수) ① 모든 입·직원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이 지침을 준수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 보건위위회에서 정한다.
-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소방,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법정 선임자는 그 소속 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함 수 있다.
- ④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公社) 표준문서의 안전보건 관련 절차서 및 지침서에 따른다.

부칙 [2022.02.15]

이 지침은 2022. 02.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9]

이 지침은 2022. 12. 09.부터 시행한다.